

가정보호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가정보호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법률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정비되지 아니한 규정 일부를 정비하고, 피해자가 통지받는 결정 범위를 확대하며, 피해자 개인정보보호조치의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결정서에 피해자 및 보조인의 주거 또는 주소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3항)
- 판사가 결정서에 서명날인하는 중요 결정을 피해자도 빠짐없이 통지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3항)
- 임시조치·보호처분·임시보호명령·피해자보호명령결정을 집행한 이후에 그 결정이 변경된 경우에, 기존에 집행을 담당한 집행기관에도 이를 통지하도록 함(안 제5조의2)
- 임시조치가 효력을 잃은 때에도 대응하는 검찰청에 사건기록과 결정서를 송부하도록 함(안 제9조제1호)

- 임시조치가 행하여진 사건을 검사가 형사사건으로 기소하는 등의 이유로 임시조치가 그 효력을 잃은 때, 해당 임시조치를 결정한 법원에도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도록 함(안 제10조제6항)
- 병과할 수 있는 임시조치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26조)
- 판사가 피해자 및 보조인의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조치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67조의13제3항)

4. 가정보호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붙임과 같음

5.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과 같음

가정보호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정보호심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피해자 및 보조인의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및 보조인의 주거 또는 주소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여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3조제1항 단서 각 호의 결정(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을 제외한다)은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집행기관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 ① 임시조치결정을 한 후에 이송·보호처분결정을 하거나 그 임시조치의 연장·취소·변경결정 또는 법 제51조제2항 및 이 규칙 제66조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임시조치의 집행을 담당할 경찰서의 장 또는 구치소의 장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호처분결정을 한 후에 그 보호처분의 변경·취소·종료결정 또는 법 제51조제2항 및 이 규칙 제66조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그 보호처분의 집행을 담당할 경찰서의 장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임시보호명령을 한 후에 이송결정·피해자보호명령을 하거나 그 임시보호명령의 취소·변경결정 또는 법 제55조의8제3항, 제51조제2항 및 이 규칙 제67조의32, 제66조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임시보호명령의 집행을 담당할 경찰서의 장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피해자보호명령을 한 후에 그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변경·연장결정 또는 법 제55조의8제3항, 제51조제2항 및 이 규칙 제67조의32, 제66조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그 피해자보호명령의 집행을 담당할 경찰서의 장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단서의 “임시조치”를 “법 제40조제1항제4호, 제5호의 보호처분은 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하고, 임시조치”로 한다.

제9조제1호의 “청구를 기각한 때 또는 임시조치기간이 만료되거나 임시조치가 취소된 때”를 “청구를 기각한 때, 임시조치기간이 만료된 때 또는 임시조치가 취소되거나 효력을 잃은 때”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 “법 제37조제1항제2호”를 “법 제37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임시조치의 청구”를 “임시조치의 청구 등”으로 하고, 같은 조의 제6항 중 “행위자”를 “해당 임시조치를 결정한 법원, 행위자”로 한다.

제13조 제2호 중 “있고,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국선보조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있다는 것”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위탁·유치된 행위자의 소환”을 “수용 중인 행위자의 소환”으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탁·유치된 행위자”를 “수탁·유치기관에 수용 중인 행위자”로 한다.

제26조 중 “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는 이를”을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는”으로 한다.

제44조 제1항 중 “법 제37조제1항제2호”를 “법 제37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의 제2항 중 “법 제37조제1항제3호”를 “법 제37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53조 제1항 중 “법 제40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법 제40조제1항 각 호”로 한다.

제54조 제1항, 제2항 중 “청구·신청은”을 “청구는”으로 하고, 같은 조의 제3항 중 “소환하여”를 “소환하고,”로 하며, “있고”를 “있으며”로 한다.

제59조의 제목 중 “수용중인 행위자”를 “수용 중인 행위자”로 하고, 제1항 중 “제4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제40조제1항제6호·제7호”로 하며, “수용 중인 행위자”를 “수용 중인 행위자”로 한다.

제67조의제13제3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피해자 및 보조인의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으면 피해자보호명령 청구서 부분 상의 피해자 및 보조인의 주거 또는 주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리고 송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신 설>

제8조(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임시 보호명령 및 피해자보호명령의 집행)

①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자보호명령은 결정을 한 때부터 집행한다. 다만,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은 원래의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피해자보호명령에 계속하여 집행한다.

② ~ ③ (생략)

제9조(기록등의 송부)

법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건기록과 결정서를 대응

하여야 한다.

④ 피해자보호명령을 한 후에 그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변경·연장 결정 또는 법 제55조의8제3항, 제51조제2항 및 이 규칙 제67조의32, 제66조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그 피해자보호명령의 집행을 담당할 경찰서의 장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임시 보호명령 및 피해자보호명령의 집행)

① ----- 법 제40조제1항제4호, 제5호의 보호처분은 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하고, 임시조치-----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기록등의 송부)

(현행과 같음)

하는 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1. 임시조치청구 사건의 경우 청구를 기각한 때 또는 임시조치기간이 만료되거나 임시조치가 취소된 때

2. 가정보호사건의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사유에 의한 불처분 결정이 확정되거나 보호처분 집행이 완료된 때

제10조(임시조치의 청구)

① ~ ⑤ (생략)

⑥ 검사가 사건을 기소, 불기소 또는 소년부에 송치하는 때에는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검사는 그 취지를 행위자 및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범죄사실 등의 고지)

(생략)

1. (생략)

2. 행위자는 변호사 기타 판사의 허가를 받은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국

1. -----청구를 기각한 때, 임시조치기간이 만료된 때 또는 임시조치가 취소되거나 효력을 잃은 때

2. -----법 제37조제1항제1호-----

제10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청구-----

해당 임시조치를 결정한 법원, 행위자-----.

제13조(범죄사실 등의 고지)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있다는 것

선보조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

제19조(위탁·유치된 행위자의 소환)

① 법 제29조제1항제4호·제5호의 임시조치에 의하여 위탁·유치된 행위자가 이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 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환을 받은 때에는 그 수탁·유치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행위자를 호송하고 당일의 조사·심리가 종료될 때까지 법원청사 내에서 행위자를 감호하게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6조(임시조치의 병과)

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는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44조(불처분결정)

① 판사가 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불처분결정을 함에는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판사가 법 제37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불처분결정을 한 경우에는

제19조(수용 중인 행위자의 소환)

① -----수탁·유치기관에 수용 중인 행위자-----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임시조치의 병과)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는 -----.

제44조(불처분결정)

① -----법 제37조제1항제1호-----

② -----법 제37조제1항제2호-----

위 결정이 확정된 때에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위자가 수탁·유치기관에 수용중인 때에는 수탁·유치기관의 장에게 위 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사건을 송치받을 검찰청에 미리 서면, 전화 또는 모사전송기 기타 신속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3조(집행상황보고)

① 판사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별 제40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에 관한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54조(보호처분의 변경·취소·종료)

① 법 제45조제1항·제46조·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처분의 변경·취소·종료의 청구·신청은 당해보호처분을 결정한 법원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서면에는 보호처분을 변경·취소·종료할 상당한 이유를 기재하고 이를 소명하여야 한

제53조(집행상황보고)

① -----별 제40조제1항 각 호-----

② (현행과 같음)

제54조(보호처분의 변경·취소·종료)

① -----청구는-----

② -----청구는-----

다.	--.
③ 판사는 보호처분을 변경·취소·종료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위자·피해자·가정구성원 기타 참고인을 <u>소환하여</u> 필요한 사항을 조사, 심리할 수 있고, 보호처분의 종류를 변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29조 제1항 각호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③ ----- ----- ----- ----- <u>소환하고,</u> ----- <u>있으며,</u>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의 <u>청구·신청</u> 에 대하여는 결정을 하고 <u>신청인</u> 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 <u>청구</u> ----- ----- <u>청구인</u> ----- -----.
제59조(수용중인 행위자의 항고제기)	제59조(수용 중인 행위자의 항고제기)
① 법 제29조제1항제4호·제5호 또는 제4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라 수탁·유치기관에 <u>수용중인 행위자</u> 가 항고제기 기간 내에 항고장을 그 기관의 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제출한 때에는 항고제기 기간 내에 항고한 것으로 본다.	① ----- ----- <u>제40조제1항제6호·제7호</u> ----- <u>수용 중인 행위자</u>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67조의13(소환)	제67조의13(소환)

① ~ ② (생략)	① ~ ② (현행과 동일)
③ 행위자에게 제1회 심리기일소환장을 송달할 때에는 피해자보호명령 청구서 부분을 함께 송달한다. <후단 신설>	③ ----- ----- -----. <u>이 경우 피해자 및 보조인의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으면 피해자보호명령 청구서 부분 상의 피해자 및 보조인의 주거 또는 주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리고 송달할 수 있다.</u>
④ (생략)	④ (현행과 동일)

<의안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연락처	(02) 3480-1609